Ⅱ IFRS17 주요 내용

1. 측정모형

가. 개요

IFRS17은 보험계약 발행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집합의 형태에 따라 3가지 모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직접참가특성(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유무에 따라 변동수수료접근법(Variable Fee Approach; VFA)과 일반 모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 중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은 잔여보장부채 측정 시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이라는 일반모형에 비해 단순화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Ⅱ-2〉 보험부채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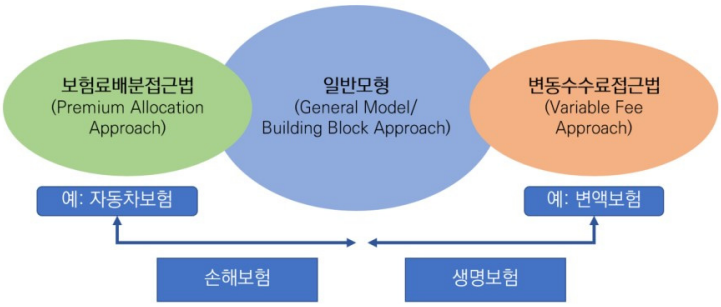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9b)

이 때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의 집합과 일정 몫에 대한 조건 등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①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합(Pool)의 일정 몫(Defined share)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됨
②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함
③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에는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에서 공정가치 변동에 의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나. 일반 모형

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일반 모형을 적용하며 대부분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 인식 시 보험계약집합은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불이행위험)은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최초 인식 시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인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금유출 현재가치가 7,500원이고 위험조정이 1,000원인 경우 현금유입(보험료)이 10,000원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1,500원(=10,000원-7,500원-1,000원)으로 이익계약이 되어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이익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8,000원이라면 △500원(=8,000원-7,500원-1,000원)이 되어 손실발생계약으로 인식한다. 즉, 500원은 손실금액으로 즉시 인식하며 이때 보험계약마진은 음수가 아닌 '0'으로 처리한다.

〈그림 Ⅱ-2〉 IFRS17 보험부채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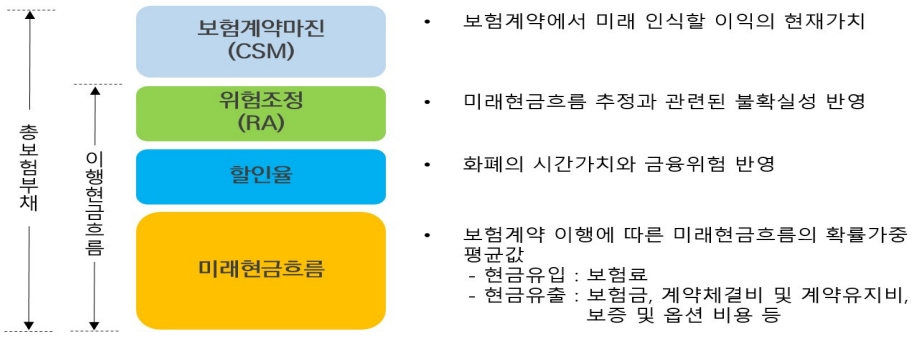

자료: 오광욱·이태기·오명전(2023)

보험부채는 크게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잔여보장부채의 의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을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로 보험보장 중에서 만료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 있는 의무이다. 반면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서 조사 후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비용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고 보험사건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된다.

매 보고기간 말 보험계약부채는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발생사고부채에서는 미실현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Ⅱ-3〉 IFRS17 보험부채 구성

자료: 오광욱·이태기·오명전(2023)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이 제공할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나타낸다. 최초 인식 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특정 변동분의 인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변동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 이익의 변동을 반영한다.

보고기간 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신계약 효과와 이자부리 등을 조정한 금액이 된다.

①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② 보고기간 중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
  - 최초 인식 단계의 할인율 사용
③ 미래 서비스와 연관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 미래 서비스와 연관하여 해당 기간동안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
  - 해당 기간동안 지급될 것을 예상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동안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④ 보험계약마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⑤ 해당 기간 중 서비스 이전에 따른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9a)

즉, 기초 보험계약마진에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을 합산하고, 이자부리, 경험조정 등을 반영한 후 보험서비스 이전에 따른 금액을 상각하게 되면 기말 보험계약마진이 된다.

〈그림 Ⅱ-4〉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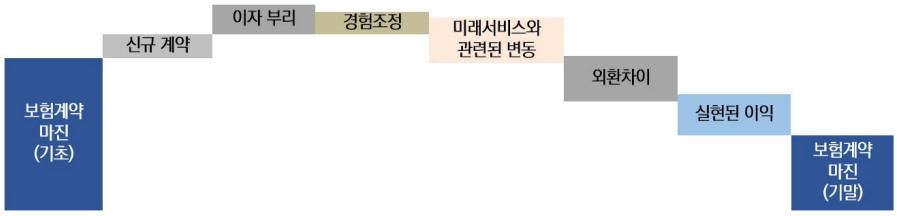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9a)

한편, 할인율에 대한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만 인식하거나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 가능하다. 대부분 회사들은 할인율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보다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금리 변동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된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하며 보유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림 Ⅱ-5〉 후속 측정 시 손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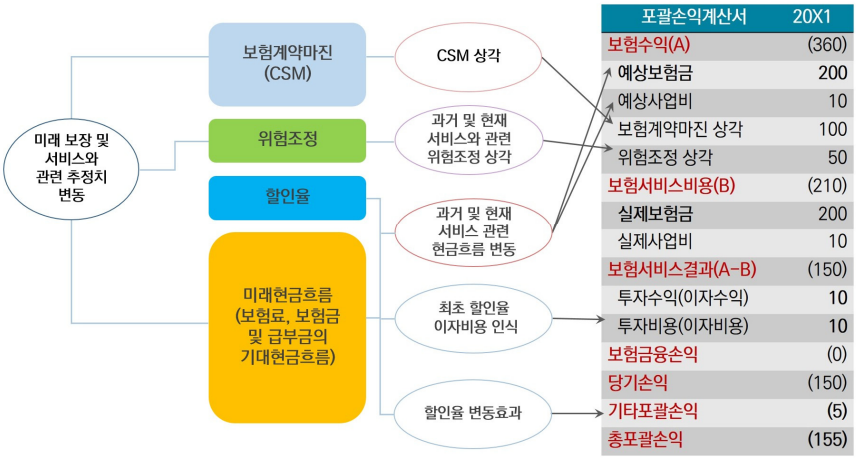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9a)

다.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계약 중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경우는 변동수수료접근법(Variable Fee Approach; VFA)을 적용한다. 직접참가특성을 가진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 되고 이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항목에 근거하여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은 주로 투자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 등이 해당되며 일반 모형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좀 더 클 수 있다. 최초 인식 시 측정 방법은 일반 모형과 동일하나 후속측정 시 계리적 가정 변동뿐만 아니라 금융위험 변동도 일반 모형과 달리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이라 함)에서 조정한다.

〈표 Ⅱ-1〉 모형별 비교

회계모형	계리적 가정 변동	금융위험 변동	보험계약마진 이자부리
일반 모형	CSM 조정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선택	최초 인식 시 할인율
변동수수료모형	CSM 조정	CSM 조정	이자부리 없음 (현행 할인율로 CSM 재측정)

자료: 오광욱·이태기·오명전(2023)

한편,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한 보험계약의 시장리스크 감소를 위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는 위험경감기법을 사용한 경우 보험계약마진 조정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보험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친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기초항목 중 보험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②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 관련 이행현금흐름에 금융위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동 이행현금흐름

다만, 위험경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는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해야 하고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아야 한다.[1)]

라.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은 일반적인 보험부채 측정 방식이 아닌 예외적인 측정방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 보험기간이 단기인 계약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집합 개시시점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일반 모형이나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와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집합에서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B116

〈그림 Ⅱ-6〉 모형 비교

자료: 오광욱·이태기·오명전(2023)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일반 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에 비해 좀 더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다. 최초 측정 시는 수취한 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2]을 차감하여 측정하며, 후속 측정 시에는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보험료 등을 가산하고 지급금 등을 차감하여 측정한다.[3]

〈표 Ⅱ-2〉 보험료 배분접근법 측정 방법

구분	〈최초 인식 시〉	〈후속 측정 시〉
측정방법	① - ② ± ③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측정기준	① 최초 인식 시 수취 보험료 ② 보험취득 현금흐름 ③ 발행한 보험계약 인식 전에 발생한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	① 해당 기간 수취 보험료 ② 보험취득 현금흐름 ③ 보고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과 관련된 금액 ④ 금융요소 조정분 ⑤ 해당기간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⑥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자료: 김호균·김혜경·한승엽(2023)

2) 보험취득 현금흐름(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은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되며 실무적으로는 신계약비에 해당함

3) 김호균·김혜경·한승엽(2023)

2. 재무제표 표시[4)]

IFRS17과 IFRS4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時價平價)와 함께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수익인식 기준 변경이다. IFRS17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Best Estimate Liability; BEL), 할인율(Discount rate), 위험조정(Risk Adjustment; RA) 및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중 보험계약마진(CSM)은 보험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이익의 현재시점 가치를 나타내고 향후에 실현된 이익으로 점진적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 이익을 일단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IFRS4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IFRS17은 구체적인 산출방법 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독회계에서 비교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조정은 보험위험으로 한정되며 신뢰수준 75%를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다. 할인율은 감독당국이 직접 산출한 할인율 곡선을 감독당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에 대한 산식을 제공한다.

$$\text{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_t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k}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n = \text{잔여현금흐름 프로젝션 기간})$$

이 산식을 살펴보면 보험계약마진을 서비스제공량[5)]에 비례하여 인식하므로 보험계약 기간별 유지자 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보험계약기간이 장기라면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 수가 감소하므로 서비스제공량도 초기에는 많지만 기간경과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초기에 보험계약마진 상각액이 많고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되는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IFRS4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 판매비 집행 등으로 인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FRS17은 초기부터 이익을 인식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계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를 재정리함

5) 보험금 지급 등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계약서비스라고 함

〈그림 Ⅱ-7〉 이익인식 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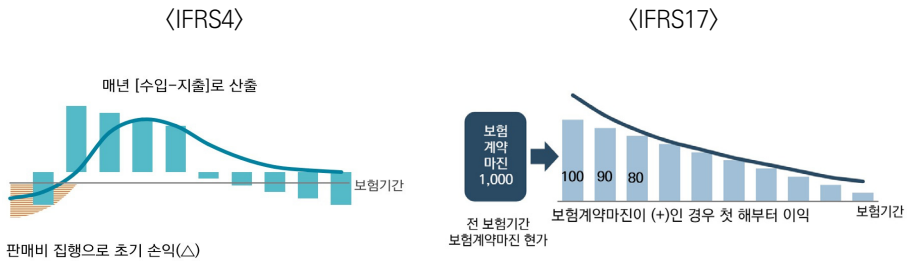

자료: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

한편 최초 인식 시 이행현금흐름의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를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계약과 구분하여 평가한다. 즉,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순유출금액은 손실로 즉시 인식한다.

이와 같이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반면 이익은 보험기간동안 배분하여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표시된 보험부채를 이용하여 원천별로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한 후 발생 원천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하며 보험이익의 경우 상품마진, 리스크마진, 예측마진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8〉 원천별 이익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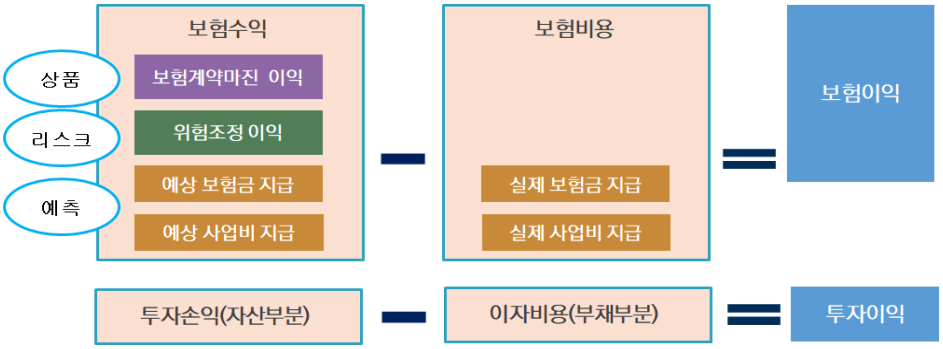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21)

이처럼 IFRS17은 IFRS4와 다르게 손익계산서에서 원천별 이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6] IFRS4는 ① 영업보험료가 보험 관련 수익이지만, IFRS17은 ②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보험계약마진 등에 기반을 두어 수익을 인식한다. 사업비와 보험금에서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익이 안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③ 또한 보험관련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 이자비용이 IFRS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IFRS17 부채 평가 시 사용된 할인율이 투자비용으로 사용된다. ④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9〉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IFRS4, IFRS17)

IFRS 4	
Ⅰ. 보험관련수익	**500**
1. 보험료수익	500
Ⅱ. 보험관련비용	**410**
1. 지급보험금	300
- 사고보험금	100
- 중도급부금	200
2. 직접유지비	5
3. 신계약비 상각	40
4. 준비금 전입액*	65
Ⅲ. 보험관련이익	**90**
Ⅳ. 투자이익	**20**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5
Ⅴ. 영업이익	**110**

IFRS 17	
Ⅰ. 보험수익	**200**
1. 예상 사고보험금, 예상 직접유지비	105
2. 예상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80
Ⅱ. 보험비용	**120**
1. 실제 사고보험금, 실제 직접유지비	105
2. 실제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간접사업비	0
Ⅲ. 보험이익	**80**
Ⅳ. 투자이익	**5**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부채이자비용 등)	20
Ⅴ. 영업이익	**85**

① ② ③ ④

* 준비금 증감(50) + 부채이자비용(15)

자료: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

6)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2022)